

행정처분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(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(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·제12호·제13호, 제32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, 가축분뇨관련영업,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) 그 밖에 시설설치자,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배출시설설치·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2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3)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3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4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 제4호	폐쇄명령			
5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5호	경고	사용중지 명령 1개월	사용중지 명령 2개월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

6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6호	사용중지 명령 1개월	폐쇄명령		
		사용중지 명령 1개월	사용중지 명령 2개월	폐쇄명령	
7)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나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7호	경고	사용중지 명령 1개월	사용중지 명령 2개월	허가취소
		경고	경고	사용중지 명령	사용중지 명령
		경고	경고	사용중지 명령 1개월	사용중지 명령 2개월
8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·변경하지 않은 경우 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8호	경고	사용중지 명령	사용중지 명령 1개월	허가취소 또는
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1개월 개선명령	2개월 사용중지 명령 1개월	폐쇄명령 사용중지 명령 2개월
9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 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9호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사용중지 명령	사용중지 명령	사용중지 명령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1개월 경고	2개월 사용중지 명령 1개월	3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
10)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10호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허가취소		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경고	경고	사용중지 명령	사용중지 명령
11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11호	경고	사용중지 명령	1개월 사용중지 명령	2개월 사용중지 명령
12)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 인·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 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 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 치·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	법 제18조 제1항제12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2개월 	3개월

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				
13)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1항제13호	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			

나.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1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명령 3개월	폐쇄명령
2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2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명령 3개월	폐쇄명령
3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3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명령 3개월	폐쇄명령
4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6항제4호	경고	처리금지 명령 1개월	처리금지명령 3개월	폐쇄명령

다.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3호	허가취소			

4)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 준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4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5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·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 고 배출시설·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5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6)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6호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		
7)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 설·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 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7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8)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·운 반 또는 처리한 경우 가) 수집·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) 그 밖의 수집·운반 및 처 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8호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		
9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9호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		
10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0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
11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)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1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

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	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
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
라)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
마)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	허가취소
12)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2호	영업정지	허가취소	6개월	
13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3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
14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4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
15)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	허가취소			
16)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,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6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
17)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	법 제32조 제1항제17호	경고	영업정지	영업정지	

인계·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					
18)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가)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은 경우 나)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8호	경고 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1개월 3개월	영업정지 3개월 6개월	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
19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2조 제1항제19호	영업정지 1개월 경고	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

라.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2)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	
3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)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	법 제35조 제1항제4호	경고 경고	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	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	등록취소 등록취소

경우 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		경고	1개월 영업정지 1개월	3개월 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4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5호	경고	등록취소		
5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 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6호				
가)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을 한 경우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나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을 한 경우	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
다)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을 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라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한 경우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6)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7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	
7)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 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	법 제35조 제1항제8호	등록취소			
8)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	법 제35조	영업정지	등록취소		

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	제1항제3호	6개월			
9) 위 8)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3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10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9호				
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허가취소
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